

안전인증소식

# [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의 궁금한 점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Q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확인

당사는 모션시뮬레이터를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로 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발 모델의 경우 6자유도 방식의 Inverted Type의 체감형 라이드 기기이며, 상기의 모델은 User operator 방식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구조물 즉 Cabin이라고 불리는 Part의 안에 들어가서 모션을 체감하는 류의 동작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모델에 대한 인증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6축의 자유도를 가진 모션 베이스와 상관좌석이 움직이는 체감형 게임시설물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의료기기 제품의 공산품인증 문의**

당사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금번 의료용으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운동(헬스)기구 공산품으로 등록하고 싶어 질문을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품의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지: 한국
- 정격전압: 220V AC
- 주파수: 60Hz
- 근력강화 운동기구

**A**nswer 헬스기구는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이므로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율 안전확인대상 품목인 헬스기구 중 전기를 사용하는 헬스기구는 2010.1.1일 이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허가심사팀)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가정용 전기청소기의 안전인증관련 문의**

청소기 안전인증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청소기 안전인증 관련 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은?
2. 2010년부터 청소기 안전인증 대상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기준 적용 시점은 통관기준인지요?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청소기는 그동안 전동기의 소비전력 1.5kW 이하의 제품으로 안전인증 대상범위를 한정해 왔으나, 최근 소비전력이 1.5kW 이상인 제품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전력이 큰 가정용 전기 청소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5kW 초과 2.5kW 이하의 제품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 지정(08.12.31일, 시행규칙 개정공포)하여 2010.1.1일부터 출고(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안전인증을 받아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전기청소기는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